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76

발의연월일: 2020. 6. 23.

발 의 자:김영주·정청래·신동근

박광온 · 이학영 · 이상헌

안민석 • 전해철 • 김승남

도종환 의원(10인)

제안이유

최근 방송사와 제작사 간 외주제작 관련 불공정 관행 문제와 함께 스태프에 대한 임금체불 및 장시간 촬영 등 제작인력의 노동환경에 대한 문제제기 및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방송영상독립제작사는 방송영상 제작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으로는 제작사 신고가 의무사항이아니며, 제작사가 준수해야 할 의무도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방송영상독립제작사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건강한 방송영상독립제작사를 육성하고, 제작인력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공정한 방송영상 제작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이하 "독립제작사"라 함)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함(안 제10조의3 신설).

- 나. 독립제작사는 방송영상물 제작에 참여하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중문화예술인 또는 같은 법 제2조제9호의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에게 임금 또는 계약금액을 체불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를 위반한 독립제작사에 제작지원 중단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4 신설).
- 다.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독립제작사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제1항).
- 라. 독립제작사의 신고를 한 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문화체육 관광부장관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58조의2 신설).
- 마. 독립제작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사업을 하거나 독립제작사 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계약금액을 체불한 자 등에게 5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59조제2항).

법률 제 호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0호 중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한"을 "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방송사업자등이 방송 또는 시청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방송 영상물을 제작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0조의3 및 제10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0조의3(독립제작사의 신고 등) ① 독립제작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 ③ 제58조의2제1항에 따라 영업폐쇄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없다.

- 제10조의4(독립제작사의 준수사항) ① 독립제작사는 방송영상물 제작에 참여하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중문화예술인 또는 같은 법 제2조제9호의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에게 임금 또는 계약금액을 체불해서는 아니 된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위반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독립제작사에 관련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독립제작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위반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독립제작사의 임금체불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독립제작사의 임금체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한 독립제작사에 대하여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투자회사 및 투자조합의 투자와 제11조제1항에 따른 제작 지원을 중단하게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투자와 제작 지원을 배제하도록 할 수 있으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지원을 중단・배제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제11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

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이 경우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독립제작사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독립제작사의 제작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독립제작사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독립제 작사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 받은 독립제작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독립제작사와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해관계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1조의3(영업의 승계) ① 제10조의3에 따라 신고를 한 독립제작사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에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양수인등"이라 한다)이 종전의 독립제작사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 상속일 또는 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

- 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양수인등은 그 양수일, 상속일, 합병일부터 종전의 독립제작사의 지위를 승계한다.
- ④ 제11조의2에 따라 폐업신고에 의하여 신고사항이 말소된 독립제작사가 1년 이내에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 그 독립제작사는 폐업신고 전의 독립제작사의 지위를 승계한다.
- 제52조제4항 중 "경우에는"을 "경우에는 이 법 제10조의3,"으로 한다. 제58조의2 및 제5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58조의2(행정처분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0조의3에 따라 독립제작사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 를 한 때
 - 2.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 3. 제10조의4제1항을 위반한 때
 - 4.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영업폐쇄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

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의3(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 ①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되어 독립제작사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독립제작사에 대하여 제58조의2제1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일부터 1년간, 제10조의4제4항에 따른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의 유효기간 동안 양수인등에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등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등이 양수 또는 합병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없다.

② 제11조의3제4항에 따라 독립제작사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폐업신고 전에 제58조의2제1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일부터 1년간, 제10조의4제4항에 따른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의 유효기간 동안 독립제작사의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독립제작사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행정제재처분의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제59조제2항에 제1호의2부터 제1호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독립제작사 에 해당하는 사업을 한 자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의3. 제10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임금 또는 계약금액을 체불한 자 1의4. 제10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1의5. 제11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영업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독립제작사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독립제작사 신고를 한 자(방송사업자등은 제외한다)는 제 1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독립제작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7호 중 "방송영상독립제작사, 같은 조 제21호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등 방송사업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자를"을 "방송영상독립제작사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9. (생 략)	1. ~ 19. (현행과 같음)
20.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이하	20
"독립제작사"라 한다)란 방송	
영상물을 제작하여 「방송	
법」에 따른 방송사업자・중	
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	
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	
자 또는 외국방송사업자(이하	
"방송사업자등"이라 한다)에	
게 제공하는 사업을 <u>하기 위</u>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u>다만, 방송사업자</u>
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이 방송 또는 시청자에게
에게 신고한 자를 말한다.	제공할 목적으로 방송영상물
<단서 신설>	을 제작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1. (생 략)	21. (현행과 같음)
<u><신 설></u>	제10조의3(독립제작사의 신고 등)
	① 독립제작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
	항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신 설>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 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 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 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 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 ③ 제58조의2제1항에 따라 영업폐쇄명령을 받은 후 1년이지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1항에 따른신고를 할 수 없다.

제10조의4(독립제작사의 준수사항) ① 독립제작사는 방송영상물 제작에 참여하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중문화예술인 또는 같은 법 제2조제9호의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에게 임금 또는 계약금액을 체불해서는 아니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 항 위반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독립제작사에

관련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독립제작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 항 위반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독립제작 사의 임금체불에 관한 정보 제 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독립제작사의 임금체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 항을 위반한 독립제작사에 대 하여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투자회사 및 투자 조합의 투자와 제11조제1항에 따른 제작 지원을 중단하게 하 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간 동안 투자와 제작 지원을 배제하도록 할 수 있으며, 「방 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제11조(독립제작사의 제작 지원) 제11조(독립제작사의 제작 지원) ① 정부는 독립제작사의 제작 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 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② (생략) <신 설>

<신 설>

叫.	른	방경	흥통	신발	전기	금의	ス	원
을	중	단 •	明	제할	수	있도	록	관
<u>련</u>	7]	관어	통	·보힐	<u></u> 수	있디	<u></u>	

1)			

-----. 이 경우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표준계 약서를 사용하는 독립제작사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② (현행과 같음)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독립 제작사의 제작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독립제작사에 관한 실태조 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 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독립제작사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의 제출을 요구받은 독립제작 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 에 따라야 한다.

<신 설>

<신 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독립 제작사와 관련된 정보를 종합 적으로 관리하고 이해관계자에 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 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의3(영업의 승계) ① 제10 조의3에 따라 신고를 한 독립 제작사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 나 사망한 경우 또는 다른 법 인과 합병한 경우에 그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 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이하 "양수인등"이라 한다)이 종전의 독립제작사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양도 일, 상속일 또는 합병일부터 30 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문화 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 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제52조(등록 등) ① ~ 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 우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제57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를 한 것 으로 본다.

<신 설>

쉾	Γ	L	
٩r	レ	r	

- ③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 된 경우에는 양수인등은 그 양 수일, 상속일, 합병일부터 종전 의 독립제작사의 지위를 승계 한다.
- ④ 제11조의2에 따라 폐업신고 에 의하여 신고사항이 말소된 독립제작사가 1년 이내에 제10 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 는 경우 그 독립제작사는 폐업 신고 전의 독립제작사의 지위 를 승계한다.

제52조(등록 등) ① ~ ③ (현행 과 같음)

4			<u>경</u>
우에는 여	이 법	제10조의3,	

제58조의2(행정처분 등) ① 문화 체육관광부장관은 제10조의3에 따라 독립제작사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개월 이 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제10조의3제1항에 따 른 신고를 한 때
- 2.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 3. 제10조의4제1항을 위반한 때4.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 항에 따라 영업폐쇄명령을 하 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 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 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의3(행정제재처분의 효과 승계) ① 제11조의3제1항에 따 른 신고가 수리되어 독립제작

<신 설>

사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종 전의 독립제작사에 대하여 제5 8조의2제1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일부터 1년 간, 제10조의4제4항에 따른 행 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 처분의 유효기간 동안 양수인 등에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 인등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등이 양수 또는 합병 시 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제재 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없다. ② 제11조의3제4항에 따라 독 립제작사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폐업신고 전에 제58조의2 제1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일부터 1년간, 제10 조의4제4항에 따른 행정제재처 분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의 유 효기간 동안 독립제작사의 지 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되 제59조(과태료)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2. ~ 5. (생략)

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독립제작사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있다.

제59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 (2) -----
- 1. (현행과 같음)
- 1의2. 제10조의3제1항을 위반하 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독 립제작사에 해당하는 사업을 한 자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1의3. 제10조의4제1항을 위반하

 여 임금 또는 계약금액을 체 불한 자
- 1의4. 제10조의4제2항을 위반하 여 특별한 사유 없이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 나 거짓으로 한 자
- 1의5. 제11조의3제1항을 위반하 여 영업승계 신고를 하지 아 <u>니한 자</u>
- 2. ~ 5.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